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1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1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가. 제안이유

- 강원도 자살 사망률이 높은 추이를 보임에 따라 지역핵심리더인 이장에게 ‘생명사랑지킴이’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분위기 확산과 현장중심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
- 조례의 제명을 실비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명 및 용어·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나. 주요내용

- 현실에 맞게 제명 및 용어·조문 정비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정비
- “이장의 임무”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
 - 종전 이장의 임무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 추가 신설
- “실비변상” 내용 추가(안 제4조제3항)
 -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규정”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분위기 확산과 현장중심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장에게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임무로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장”을 “평창군 이장”으로, “실비변상”을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중 “관할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